

고성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53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2. 27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3. 2	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3. 25	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제2의견국 관련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명칭변경
 - 당 초 : 고성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
 - 변 경 : 고성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
- 위원회의 위원수 조정
 - 당 초 : 50인 이내
 - 변 경 : 30인 이내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안 제3조의 구성인원 과다로 고성군의회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토론된 내용으로
-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제2의견국 추진지침('98. 10. 28) 및 행정자치부 제2의견국 추진지침보완사항(98. 12. 2) 관련 근거에 의거 고성군 각종 위원회조례와 인근 시군 형평성에 비추어 구성인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함과 명칭변경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- ※○ 제2의견국추진위원회 시군별 현황
 - 제2의견국 추진 보완사항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중 “범국민”을 “범군민”으로
“50인 이내”에서 “30인 이내”로 충분한 검토없이 변경된 사유는
- 답 : 행정자치부 보완사항 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 충분한 검토
없이 구성인원 변경은 군 규모 인근 시군 형평성 적용 및 법규연찬
부족으로 판단하며, 향후 이런사례가 없도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3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